

성남 도시관리계획(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4. 12. 23.

성 남 시 장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①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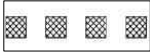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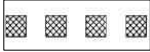
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□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(변경)

구 분	계획내용
제10조 (기정)	제10조 (대지내 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) ① “공공보행통로”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. ②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공보행통로와 도로(단지내 도로 포함)가 교차하는 곳은 ‘보행우선구조’로 조성한다. 가.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시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. 2. 공공보행통로에는 ‘보행지장물’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. 3.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. 다만,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. 4.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담장설치를 불허한다. 다만, 지형차로 인해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. • 도면표시 
제10조 (변경)	제10조 (대지내 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) ① “공공보행통로”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. ②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공보행통로와 도로(단지내 도로 포함)가 교차하는 곳은 ‘보행우선구조’로 조성한다. 가.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시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. 2. 공공보행통로에는 ‘보행지장물’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차량진출입이 허용된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(보도경계석, 보행자 안전 울타리, 과속방지턱, 차량 차단기 등)을 설치할 수 있다. (신설) 3.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. 다만,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. 4.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담장설치를 불허한다. 다만, 지형차로 인해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. • 도면표시 

나. 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